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- 나. 발 의 자: 남완현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 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완현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결산검사위원 결원,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·신설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 결원 시 선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신설(안 제4조)
- 결산검사위원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단서 조항 정비(안 제9조)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본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경진)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결산검사위원 결원,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·신설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**안 제2조**에서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지방의회의원 비율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고,
- **안 제4조**에서는 결산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 의장이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하게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으며,
- **안 제9조**에서는 검사위원의 해임 사유 중 기존 ‘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’에 덧붙여 ‘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을 때’ 해임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해임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함.

#### ○ 검토 결과

-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하였으며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남완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 의 자: 남완현, 유승용, 신흥식  
우경란, 임현호, 김지연  
의원(6인)

## 1. 제안이유

결산검사위원회 결원,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·신설하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내용 정비로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검사기간 중 결산검사위원회 결원 시 선임에 관한 절차 및 방법 신설 (안 제4조)
- 나. 결산검사위원회 신분상실 및 해임 시 단서 조항 정비(안 제9조)
- 다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본문 정비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1항”을 “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83조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6명으로 한다”를 “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”를 “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”으로, “있는”을 “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직에”를 “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”로 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영등포구의회 의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”으로, “영등포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”로, “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에 따르며,”를 “선임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결산검사기간(이하 “검사기간”이라 한다)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

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(대표 위원)”을 “(대표위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대표 위원을 두되”를 “대표위원을 두되”로, “대표 위원”을 “대표위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“대표 위원”을 각각 “대표위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15조 및 제16조”를 “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”으로, “작성하는 세입·세출결산”을 “작성한 결산서”로, “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”를 “증빙서류로 검사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이송받은”을 “이송 받은”으로, “종료”를 “완료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부득이 한”을 “부득이한”으로, “종료”를 “완료”로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”를 “결산검사”로, “종료”를 “완료”로, “10일 이내”를 “10일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임무”를 “결산검사업무”로, “종료 된다”를 “종료된다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심의시”를 “심의 시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보조인원”을 “보조 인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자료제출요구”를 “자료제출 요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정조치”를 “시정 조치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3호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”로, “결산검사기간”을 “검사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“현지교통비”를 “수당과 여비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이를 해임”을 “해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검사 기간”을 “검사기간”으로, “된 때”를 “되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을 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5호) 중 “밖의”를 “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9조 제2항의 3, 4, 5호에 따라 해임 된 때”를 “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<u>6명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검사위원의 정수) ----- ----- -- <u>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</u></p>
<p>제3조(자격)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li>4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<u>직에</u> 있었던 사람</li> </ol>	<p>제3조(자격) <u>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</u> ----- ----- ----- <u>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공무원 또는 그</u> <u>에 상당하는 직위에</u> -----</li> </ol>

제4조(선임방법) 검사위원회는 영등포구  
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의  
추천에 따라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  
회”라 한다)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 
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에 따르며,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  
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한다.

<신 설>

제4조의2(대표 위원) ① 검사위원회 중  
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, 대표 위원은  
의장이 의원인 검사위원회 중에서  
선임한다.

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 
총괄하고,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 
의회에 출석하여 검사 결과를 설명  
하여야 한다.

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 
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
의장이 지정하는 검사위원회가 직무를  
대행한다.

제4조(선임방법) ① ----- 서울특별시  
영등포구의회 의장-----  
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-----  
----- 선임하며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결산검사기간(이하 “검사기간”이라  
한다) 중 검사위원회가 결원된 경우,  
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 
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회를 선임하고  
다음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의2(대표위원) ① -----  
- 대표위원을 두되, 대표위원-----  
-----  
-----.

② 대표위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대표위원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「지방회계법」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하는 세입·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수행한다.

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검사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감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검사위원의 임무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. 다만,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.

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-----  
-----제3장 및 같은 법  
시행령 제3장--- 작성한 결산서 --  
----- 증빙서류로 검사업무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이송 받은-----  
----- 완료-----  
----- 부득이한 -----  
----- 완료-----  
----- 범위 내-----  
-----.

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완료한  
날로부터 10일 이내에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결산검사업무-----  
----- 종료된  
다. -----  
-----  
-----.

제6조(의회에서의 답변) 의회는 결산 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감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,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감사위원은 그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3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(의회에서의 답변) -----  
심 의 시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보 조 인 원 -----  
-----.

② ----- 자 료 제 출 요 구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 
----- 시 정 조 치 -----.

제8조(실비보상) ① -----  
-----  
----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검 사 기 간 -----  
-----.

②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결산검사를 종료한 날까지 지급한다. 다만, 감사 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현지교통비를 지급한다.

제9조(감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(생략)

② 의회는 감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3조에 따른다.

1.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하였을 때

3. 4. (생략)

5.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하였을 때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감사위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수당과 여비  
-----.

제9조(감사위원의 신분상실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 해임----- . <후단 삭제>

1. -----  
검사기간 -----  
----- 되어 사직서 등을  
제출하였을 ---

<삭제>

2. 3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4. -- 밖에 -----  
-----

<삭제>

제10조(검사위원의 제재) ① 검사위원이  
제9조 제2항의 3, 4, 5호에 따라 해임  
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 
위촉할 수 없다.

② (생략)

제10조(검사위원의 제재) ① -----  
- 제9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
규정에 따라 해임된 때 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